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9
----------	-------

제출년월일 : 2014. 10. 17.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 사유

안전·교육·문화·복지분야 강화를 목표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규정 목표인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공보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SNS기능 강화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수단 확보로 신뢰받는 규정 실현(안 제3조제2항)
- 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영상정보를 전담하는 팀을 전산정보과에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안전 통합 체계 구축(안 제4조제1항)
-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진흥과를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안 제5조제1항)
- 라. 복지·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향상(안 제6조제1항)
- 마. 국내 주요 사무기능 우선 표명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9. 18. ~ 2014. 10. 8.(의견제출 있음)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건설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안전행정국)</li> <li>- 안전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전산정보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고 관련팀을 신설하는데, 안전행정국 직제 제일 마지막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li> <li>- 신설 2년이 지나지 않은 '생활체육과'가 '민원여권과'앞에 있는 것은 조정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li> <li>- 안전행정국 직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li> <li>-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관광과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 · 생활체육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주민생활국)</li> <li>- '어르신장애인과'는 명칭이 지엽적이고, 어르신이 장애인 처럼 보이는 등 어감에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li> <li>-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오해의 소지 차단</li> </ul>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 제3조</li> <li>- '의회법무팀' 명칭은 의회가 집행부에 구속되는 느낌이 들고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법무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여 명칭이 부적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li> <li>- 의회명칭 사용으로 혼선이 예상되므로, 기존 명칭인 '법무팀'으로 유지</li> <li>→ 부칙 제3조제53항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병길 (마포구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li> <li>-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li> <li>- 현재 우리 구 정책관련 업무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타구도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서 신설은 불필요</li> </ul>

- 의견제출 반영한 수정사항

현행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제4조(안전행정국) ① 안전행정국에 <u>총무과·공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u> 를 둔다.	제4조(안전행정국) ① ----- <u>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u> ---	제4조(안전행정국) ① ----- <u>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생활체육과</u> ---
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u>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청소년과·청소행정과</u> 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u>복지행정과·생활보장과·어르신장애인과·가정복지과·교육청소년과·청소행정과</u> 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u>복지행정과·생활보장과·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정복지과·교육청소년과·청소행정과</u> 를 둔다.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팀장”을 “의회법무팀장”으로 한다.	<삭 제>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 10. 14.)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기획경제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은 언론·홍보·뉴미디어 등을,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심사·민원소통·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밑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공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를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생활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동청사 신축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의3.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14의2.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2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에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0. 구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 41. 전산이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42. 전산망 및 정보통신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43. 정보보안 및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기획재정국)”을“(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일자리진흥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자동차세·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건설기계취득세·건설기계등록세”를 “자동차세·차량취득세·건설기계취득세·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주민세·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균등분·주민세재산분·주민세종업원분·지방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38호 중 “부동산 취득세 및 부동산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를 “부동산취득세·부동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를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도축세·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레저세”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2호부터 제45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2. 지방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 43.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44.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45.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주민생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행정과·생활보장과·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정복지과·교육청소년과·청소행정과를 둔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복지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 복지 및 구호에 관한 사항
-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 4.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사항
-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 6.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 7. 지역복지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8.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12.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14.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7.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22.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23.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4.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8. 도서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30. 쓰레기 종량제 업무에 관한 사항
31.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



32.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

34.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35.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6.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37.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보도시설물”을 “도로시설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본청·보건소의 담당관·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복지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  
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 ⑯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 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  
장”으로 한다.

- ⑱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 ⑲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의 주관과란 중 “사회복지과”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여성정책팀장”을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출산아동팀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인터넷미디어팀장”을 “뉴미디어팀장”으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  
장”으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

다.

- 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 ㉖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재난안전팀장”으로, “재난관리팀”을 “재난안전팀”으로 한다.

- ㉗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 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

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과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㊂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㊃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 교육지원과장”을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

다.

④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청소년지원팀장”으로 한다.

⑤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의 부서별란 중 “생활안전과”를 “총무과”로 한다.

⑤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⑤⑫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 <u>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u>을 둔다.</p> <p>② <u>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감사·(민원)조사·고객만족·환경순찰 업무 등으로 한다.</u></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 <u>기획경제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u>----- -----.</p> <p>② <u>부구청장 소속으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은 언론·홍보·뉴미디어운영 등을,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심사·민원소통·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제3조의2(한시기구) ①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u>밑에 한시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u></p> <p>② (생략)</p>	<p>제3조의2(한시기구) ① ----- ----- ----- <u>소속으로</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안전행정국) ① 안전행정국에 <u>총무과·공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u>를 둔다.</p> <p>② 안전행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지방의회에 관한 사항</u></p>	<p>제4조(안전행정국) ① ----- - <u>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생활체육과</u>-----</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7. · 7의2. (생략)

8.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14. (생략)

<신설>

15. ~ 23. (생략)

24.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5. ~ 3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

7. · 7의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3의2. 동청사 신축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3의3.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14. (현행과 같음)

14의2.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15. ~ 23. (현행과 같음)

24. 사회복무요원 -----  
--

25. ~ 39. (현행과 같음)

40. 구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41. 전산이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전산망 및 정보통신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3. 정보보안 및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

국에 기획예산과 · 지역경제과  
· 재무과 · 전산정보과 · 세무1  
과 ·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2. (생략)

33. 자동차세 · 차량취득세 · 차  
량등록세 · 건설기계취득세 ·  
건설기계등록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4. 면허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5. · 36. (생략)

37. 주민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 취득세 및 부동산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농지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39. 지역개발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40. 도축세 · 경주 · 마권세 · 담  
배소비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국에 기획예산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진흥과 · 재무과 · 세무  
1과 ·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  
-----.

1. ~ 32. (현행과 같음)

33. 자동차세 · 차량취득세 · 건  
설기계취득세 · 차량 및 건설  
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3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35. · 36. (현행과 같음)

37. 주민세균등분 · 주민세재산  
분 ·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소  
득세 -----

38.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등록  
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세-  
-----

39.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도  
시지역분-----  
---

40. 지방교육세 · 레저세-----  
-----

41.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청소년과·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복지시책 및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신 설>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6. (생략)

4.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

<삭 제>

42. 지방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3.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4.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5.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행정과·생활보장과·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정복지과·교육청소년과·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  
-----.

1. 복지시책 -----

2. 복지 및 구호-----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계획-----  
-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6. (현행과 같음)

7. 지역복지육구조사 및 서비스

공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6.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8. 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 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9.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7.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1.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생 략)

14.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공-----

8.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12.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현행과 같음)

14.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17. 자활지원-----

1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20. 장애인 복지-----

21. ----- 보육사업-----

18.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21. 마포구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2. 구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2의2. (생략)

20.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생략)

24. (생략)

25. (생략)

26.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 유지 및 관리(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에 관한 사항

27. (생략)

30. (생략)

31. 음식물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32. (생략)

10.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19.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

22. 여성정책-----

23.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4.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교육환경 개선-----

27. 평생교육-----

28. (현행과 같음)

29. 청소년 지원-----

30. (현행과 같음)

31. (현행과 같음)

32. (현행과 같음)

33. -----  
--관리에 관한 사항(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

34.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36. 음식물류 폐기물 -----

-

3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항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지적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4. (생략)
- 25.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26. (생략)
- 27.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 28. ~ 44. (생략)

<신설>

제11조(직제 및 업무) ① (생략)

②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 3. ~ 17. (생략)

제8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  
-----.

- 1. ~ 24. (현행과 같음)
- 25. ----- 도로시설물-----  
-----
- 26. (현행과 같음)

<삭제>

28. ~ 44. (현행과 같음)

45.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직제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감염병-----
- 3. ~ 17.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임대민
연락처	02-3153-8216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1

(2014. 10. 31)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10월 21일

## 4. 관계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제6조(상담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 구정 목표인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행정기구를 안전·교육·문화·복지 분야 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업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안 제3조제2항 : 공보과 => 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함  
SNS기능 강화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수단 확보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공보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관함
- 나. 안 제4조제1항 : 전산정보과 내 영상정보팀 신설함  
안전업무에 대한 통합 체계 구축으로 안전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영상정보를 전담하는 영상정보팀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함
- 다. 안 제5조제1항 : 기획재정국 => 기획경제국으로 국 명칭 변경하고, 일자리진흥과 =>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유관 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해 일자리진흥과를 주민생활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함
- 라. 안 제6조제1항 : 주민생활국 => 복지교육국으로 국 명칭 변경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신설함  
복지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과(課) 명칭을 변경함.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신설함

마. 안 제8조제1항 : 건설교통국=>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함

최근 교통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주요 사무기능을 중요성에 따라 우선 표명하고자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과(課) 명칭을 변경함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민선6기의 정책목표인 교육·문화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규정목표를 가지고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 현행 => 5국·1소·1사무국/ 1담당관·2추진단·34과·16동/ 182팀을

▶ 개편(안) => 5국·1소·1사무국/ 2담당관·2추진단·34과·16동/ 187팀으로 1개 담당관/ 5개 팀을 증설하고, 3국/ 3과/ 18팀은 명칭을 변경하고, 1과(課)에 7팀은 새로 신설하고, 3팀은 분리하며, 5팀을 통합하고, 3과와 5팀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별첨 1 - 팀 단위 신설, 통합, 분리 및 부서이동 등 팀 명칭은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조례에 미포함.

○ 행정기구 개편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국 명칭 변경(3국)

▶ 기획재정국 => 기획경제국으로, 주민생활국 => 복지교육국으로, 건설교통국 => 교통건설국으로 변경

2) 부서 이동(3과)

▶ 공보과를 안전행정국 => 부구청장 직속으로, 전산정보과를 기획재정국 => 안전행정국으로, 일자리진흥과를 주민생활국 => 기획재정국으로 이동

3) 부서 신설(1과)

▶ 어르신복지장애인과(주민생활국)

#### 4) 부서 명칭 변경(3과)

- ▶ 공보과 => 공보담당관으로,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과로, 지적과 => 부동산정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현재 담당업무 수행 중인 직원에게 행정기구 개편관련 설문조사(직원 설문조사 응답자 : 101명)를 실시하고, 2014.7.25일부터 동주민센터, 구청 해당관련 팀장 및 구의회 의원에게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와 조직개편 해당담당 부서장, 국장 및 직원 개인별 면담을 실시함은 물론 2014. 9. 18. ~ 10. 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4건의 의견이 되어 검토결과 3건이 반영되고 1건이 미반영 처리 되었음.

#### < 접수 의견 검토 결과 >

- 1) 구정의 1번째 목표가 강력한 안전도시 만들기로 최근 각종 범죄 예방용 C. C. T. V 등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과내 영상정보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하면서 안전행정국의 직제상 제일 마지막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검토결과 반영**'(생활체육과 앞 과순(課順) 변경)
- 2) 어르신장애인과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각종 행정용어에 '노인'을 '어르신'으로 적극 활용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어르신장애인과로 과(課)명칭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이 명칭 또한 어르신이 장애인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어감에 문제가 있음 - '**검토결과 반영**'(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변경)
- 3) '의회법무팀' 명칭은 의회 내 법무팀으로 오해하기 쉽고 의회가 집행부에 구속되는 느낌이 들어 문제가 있음 - '**검토결과 반영**'(법무팀 : 의회업무처리)
- 4)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기 바람 - '**검토결과 미반영**'(우리 구 정책관련 업무는 이미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타구도 기획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어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별첨 1

**< 팀단위 신설, 통합, 분리 및 부서이동 등 팀 명칭 개정사항 >**

1) 팀 신설(7팀)
▶ 영상정보팀(전산정보과), 지방소득세팀(세무2과), 주거복지팀(복지행정과), 자활의료보장팀(생활보장과), 교통개선팀(교통행정과), 하천팀(치수과), 위생지도팀(위생과)에 신설하고
2) 팀 통합(5팀)
▶ 총무과내 대외협력팀+능력개발팀=> 교육후생팀으로, 생활체육과내 박영석 기념팀+체육진흥팀=> 체육진흥팀으로, 기획예산과내 정책통계팀+공기업팀=>경영통계팀으로, 가정복지과내 저출산대책팀+아동청소년팀=> 출산아동팀으로, 위생과내 원산지지도팀+식품위생팀=> 식품위생팀으로 팀을 통합
3) 팀 분리(3팀)
▶ 문화관광과내 관광진흥팀=> 관광진흥팀과 관광사업팀으로 생활보장과내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과 장애인자립팀으로 가정복지과내 보육행정팀=> 보육행정팀과 보육지원팀으로 팀을 분리
4) 팀 이동(5팀)
▶ 통합조사관리1팀(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로), 통합조사관리2팀(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로), 노인복지팀(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노인시설팀(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으로, 장애인복지팀(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으로 팀을 이동
5) 팀 명칭 변경(17팀)
▶ 총무과내 안전재난관리팀=> 재안안전팀으로, 공보과내 인터넷방송팀=> 뉴미디어팀으로, 문화관광과내 출판영상팀=> 문화사업팀으로, 복지행정과내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1팀으로, 통합조사관리2팀=> 통합조사2팀으로, 복지자원관리팀=> 복지자원팀으로, 희망복지지원팀=> 희망복지팀으로, 일자리진흥과내 사회적기업팀=> 사회적경제팀으로, 생활보장과내 노인복지팀=>어르신복지팀으로, 노인시설팀=> 어르신시설팀으로, 생활보장팀=> 기초보장팀으로, 가정복지과내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으로, 환경과내 생활공해팀=> 생활환경팀으로, 교통행정과내 교통체납정리팀=> 교통체납팀으로, 교통지도과내 주차세입관리팀=> 주차세입팀으로, 보건행정과내 방역팀=> 감염병관리팀으로, 지역보건과내 보건관리팀=> 건강지원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



<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의견 제출 >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건설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안전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전산정보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고 관련팀을 신설하는데, 안전행정국 직제 제일 마지막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li> <li>- 신설 2년이 지나지 않은 '생활체육과'가 '민원여권과'앞에 있는것은 조정이 필요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행정국 직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li> <li>-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관광과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 · 생활체육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주민생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장애인과'는 명칭이 지엽적이고, 어르신이 장애인처럼 보이는 등 어감에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오해의 소지 차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법무팀' 명칭은 의회가 집행부에 구속되는 느낌이 들고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법무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여 명칭이 부적당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명칭 사용으로 혼선이 예상되므로, 기존 명칭인 '법무팀'으로 유지</li> <li>=&gt; 부칙 제3조제53항 삭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병길 (마포구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 요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 구 정책관련 업무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타구도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서 신설은 불필요</li> </ul> </li> </ul>

#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3.5, 일부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 조례 제114호, 1990.3.2 제정, 조례 제 876호, 2012.9.27 일부개정]

- 제6조(상담관) ①상담관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무업무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2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중평군		12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

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7. 위 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실·국이 있는 시·군·구와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둘 수 있다.

##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6.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